

보도시점 2024. 3. 26.(화) 12:00 (2024. 3. 27.(수) 조간)

유연근무를 희망하시나요? 무료로 컨설팅받으세요

- 고용노동부, 2024년 유연근무 종합 컨설팅 참여기업 모집(3.26.~4.12.)
- 희망기업에 컨설팅, 기반 시설 투자비, 장려금 등 패키지 지원

기업체는 성남시 소재한 47명 규모의 게임개발 기업으로, 지난해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재택근무 컨설팅의 도움을 받았다. 게임 업계의 우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재택근무를 도입했으나 체계적인 관리 규정 등이 없던 차에 무료 컨설팅을 지원받게 되면서, 복무 관련 규칙은 물론 업무보고 체계 마련, 보안 관련 의무사항 등 체계적인 재택근무 운영 기반을 갖추 수 있게 되었다. 현재 전 직원이 주 2회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거리 제한 없이 인재를 채용하고, 근로자 친화적 근무환경으로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기존의 “재택근무 컨설팅”을 올해부터 “유연근무 종합 컨설팅”으로 기능을 확대하고, 3.26.(화)부터 컨설팅을 원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유연근무 종합 컨설팅은 해당 기업의 업종·직무 특성 등을 분석하여 최적의 유연근무 도입 및 활용 방법을 제시하게 된다. 기업별로 약 12주 동안 인사·노무 및 정보기술(IT) 분야 전문 컨설턴트가 각 1명씩 배치되어, 기업 진단분석, 인사·노무제도 및 기반 시설 설계, 정부의 재정지원 안내·신청, 규정 마련 및 기반 시설 구축, 시범운영, 사후관리까지 진행된다. 이를 위해 고용부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 한국표준협회, 한국생산성본부, 시애틀컨설팅(주)를 컨설팅 기관으로 선정했다.

컨설팅 희망기업 모집은 3.26.(화)부터 4.12.(금)까지 3주간 진행되며, 이후 7월까지 세 차례 정도 추가 진행하여 400개 기업을 모집한다. 특히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유연근무에 대해서는 우선하여 컨설팅을 제공한다.

컨설팅을 원하는 중소·중견기업은 신청서, 수행계획서, 노·사 대표 합의 확인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 및 고용보험 완납 증명원 등을 아래 접수처로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서식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 뉴스·소식 - 공지 사항)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 (우편 접수처) 세종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문화개선정책과 (30117)
 ** (전자우편 접수처) suwon@korea.kr

고용노동부는 컨설팅 이외에도 유연근무 운영을 위한 기반 시설 투자비와 실제 유연근무 운영을 촉진하기 위한 장려금을 지원한다.

먼저 기반 시설 투자비는 기존의 재택·원격근무에 대한 근태관리 및 정보 보안 시스템 투자비 지원(50%, 2천만원 한도) 이외에 올해부터 시차출퇴근·선택근무 등에도 근태관리시스템 투자비를 지원한다(70%, 750만원 한도). 특히 올해부터는 유연근무 장려금 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기반 시설 투자비만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원절차도 간소화했다.

장려금의 경우 소속 근로자에게 선택·재택·원격근무를 허용한 기업에 해당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0만원을 1년간 지원한다.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선택·재택·원격근무를 허용한 경우에는 월 최대 40만원 지원 및 시차출퇴근을 허용한 경우에도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한다.

유연근무 기반 시설 투자비 지원, 장려금 지원을 원하는 기업에서는 언제든지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이나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컨설팅을 받는 기업은 원하면 기반 시설 및 장려금을 패키지로 지원받을 수 있다.

편도인 고용지원정책관은 “과거의 9시에서 6시 근무에서 벗어나 근로시간이나 장소를 유연하게 운영하는 기업들이 노동시장의 새로운 경향으로 자리 잡고 있다”라며 “유연근무는 개별 기업의 노사가 자율적 합의·선택에 따라 도입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부는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없도록 빈틈없이 지원할 계획이므로 정부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도움을 받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 <붙임1> 2024년 「유연근무 종합 컨설팅」 공금증을 풀어드립니다
- <붙임2> 2023년도 「재택근무 종합 컨설팅」 주요 사례
- <붙임3> 2024년 유연근무 지원제도 포스터
- <붙임4> 2024년 「유연근무 종합 컨설팅」 신청서

담당 부서	고용지원정책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책임자	과 장	장현석 (044-202-7496)
		담당자	사무관 주무관	최경선 (044-202-7497) 김민석 (044-202-7502)



2024년 「유연근무 종합 컨설팅」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Q1 유연근무를 도입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유연근무 도입을 주저하고 있거나, 도입을 했더라도 경험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은 2024년 「유연근무 종합 컨설팅」 사업에 참여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유연근무 종합 컨설팅」 사업은 위와 같이 유연근무 도입을 원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유연근무 도입 및 안착을 위한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Q2 어떤 기업이 참여가능한가요?

아래의 참여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중견 기업이면 참여가 가능합니다.

- * ❶ 고용보험 미가입·체납 사업장 ❷ 최근 3년간 임금체불 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장
- ❸ 최근 3년간 산업재해 관련 명단 공표사업장 ❹ 2024년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 사업장
- ❺ 대기업,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Q3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1차 모집기간은 2024.3.26.(화)부터 2023.4.12.(금)까지입니다.
1차 모집 신청기간이 지나더라도 2~4차 모집(7월까지 3차례 추가 공고 예정)에서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로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http://www.moel.go.kr>)에서 사업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4 컨설팅 지원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컨설팅은 총 12주동안 진행되며 사업장에 4회이상 방문을 하여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1~2주차는 기업진단, 3~8주차는 인사·노무제도 설계 및 정부지원제도 신청 연계를 지원하고,
9~10주차는 유연근무 시범운영을 도입·운영합니다. 11~12주차는 사후관리를 통해 지속적으로 유연근무제도가 기업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Q5 어떤 내용으로 컨설팅 지원이 되나요?

컨설팅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① 유연근무* 도입 범위 및 운영방식 검토, 적합직무 선별
* 재택·원격근무, 시차출퇴근, 선택근무, 기타 유연근무 등
- ② 운영규정 마련 등 인사·노무관리 체계 구축
- ③ 유연근무 관련 노동법적 쟁점사항 자문
- ④ 유연근무 친화적 조직문화 개선 교육
- ⑤ 유연근무 IT 인프라 구축·활용방안 자문
- ⑥ 유연근무 장려금, 인프라 구축비 지원 등 유연근무 관련 정부지원사업 연계
- ⑦ 컨설팅 종료 이후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사후 상담서비스 지원



Q6 「유연근무 종합 컨설팅」은 기업에 어떤 도움을 주나요?

「유연근무 종합 컨설팅」을 통해 유연근무를 체계적으로 도입한 기업은 유연근무 도입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일·육아 병행에 도움을 주고 출퇴근 시간이 줄어들어 업무만족도가 높아지면서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기업이미지 상승 및 우수인재 유치에도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Q7 「유연근무 종합 컨설팅」 참여 기업에 혜택이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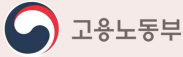
「유연근무 종합 컨설팅」 참여 기업은 체계적 유연근무 도입을 통한 효과 외에도 고용노동부의 「유연근무 장려금」, 「일·생활균형 인프라 지원」 등을 신속하게 연계하여 패키지로 지원해 드립니다.

Q8 현재 유연근무를 활용하고 있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요. 상담을 받을 수 있을까요?

유연근무 도입 및 활용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재택근무 온라인 상담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소*에 궁금한 점을 올리면 관련 질문에 대한 상담을 해드리고 있으며 컨설팅 사후 추가 상담 등이 필요한 경우 요청시 컨설팅 기관을 통해 사후 상담 등을 진행해 드립니다.

* 인터넷 누리집(재택근무종합안내.kr)을 통해 상담 중

사업장명	근로자수	업종	주요 컨설팅 사례
(주)OOOOO (서울 강남구)	42명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컨설팅) 코로나19 당시 취업규칙, 인사·노무관리, 인프라 등을 고려하지 않고 급하게 재택근무를 도입하여 좀 더 체계적인 재택근무 기반을 마련하고자 컨설팅을 신청 - 재택근무 절차를 정비하고 전자적인 근태관리 방식을 도입하여 재택근무자의 출퇴근 관리 및 커뮤니케이션 등에 활용 ○ (유연근무) 경영지원 직군을 제외한 전직원이 주 4~5회의 높은 횟수로 재택근무를 실시하면서 시차출퇴근제도 함께 활용 ○ (도입효과) 신규채용자가 많이 늘어나는 등 우수인재 이탈 방지 및 채용에 긍정적 효과를 거두고 있음
OOO(주) (경기 성남시)	47명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컨설팅) 우수한 인재 영입을 위해 재택/사무실 근무가 가능한 하이브리드 근무를 도입하였으나 관련 규정 등은 부재 - 재택근무에 대한 복무규칙, 업무보고 체계, 보안의무 및 업무태만 시 재택근무 해제 등 관련 규정과 근태관리 및 노무관리 체계 정립 ○ (유연근무) 전 직원 주 2회 수시형 재택근무 활용 ○ (도입효과) 재택근무를 통해 출퇴근 부담이 줄어들면서 인재를 거리 제한 없이 채용, 근로자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으로 창의력 발휘
OOOO(주) (서울 용산구)	63명	시스템 소프트웨어 연구개발업	○ (컨설팅) 재택근무 규정을 재정비하고 유연한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 컨설팅 신청 - 타 기업의 우수사례를 분석하고 재택근무에 대한 규칙(10계명)을 설계하였으며, 재택근무자의 근무시간을 09:00~18:00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코어타임(10:00~15:00)을 설정하는 등 재택근무 관련 제도 정비 ○ (유연근무) 전 직원이 주 1회 하이브리드 재택근무 실시 ○ (도입효과) 재택근무를 체계적으로 운영하면서 재택근무를 휴가로 인식하고 있던 근로자들이 또 다른 근무형태로써 인식을 개선하게 되었고, 업무 집중도 향상 및 업무 협업 문제도 개선
(주)OOOO (서울 광진구)	66명	도·소매업	○ (컨설팅) 재택근무를 도입하였으나 인사·근태관리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컨설팅 참여 - 컨설팅을 통해 재택근무 도입 및 활용 목적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업무보고 체계 및 회의 체계를 보완하여 효율적인 재택근무 관리 방안 마련 ○ (유연근무) 물류팀 5명을 제외한 전 직원 주 1회 재택근무 실시 ○ (도입효과) 근로자가 스스로 스케줄을 유연하게 활용하여 일·생활 균형이 기여
OOOO(유) (세종시)	230명	육가공업	○ (컨설팅) 코로나19 계기로 사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재택근무를 실시했으나 법률적 검토 없이 도입 - 노·사가 재택근무 적합 직무 발굴을 진행하여 직무별로 적합 직무 선정, 최소한의 협업을 위해 부서 재량으로 의무근로 시간대 및 출근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정 마련 ○ (유연근무) 사무직 45명 중 필수인력을 제외한 30명 재택근무 (주 1~2회 15명, 월 1~2회 15명), 사무직 전원 선택근무 가능 ○ (도입효과) 사무직은 재량에 따라 재택근무를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지방에 있는 단점을 보완, 근로조건 및 복지 향상 도모, 유연근무 장려금으로 부담 경감



사장님!!

✓ 옆에 회사는
유연근무 한대요.

우리도 **정부 지원**
좀 알아 볼까요?

중소·중견기업
**유연근무
지원제도**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홈 페이지



근로시간을 단축한 기업에 장려금 지원

Ⅰ 소정근로시간 단축 지원



개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기업



해당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50만원 지원(1년)



Ⅱ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

사업장 전체의 실근로시간을
단축한 기업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지원(1년)

유연근무 기업에 재정지원 (택배·원격·선택근무 및 시차출퇴근)

경험이 없어
고민하는 기업

컨설팅 지원

전문기관이 유연근무
도입·운영 방법 등
상세한 무료 컨설팅 제공



시설도입이
부담되는 기업

인프라 지원

유연근무 운영을 위한
근태관리·정보보안 시스템
투자비 50~80% 지원



노무관리가
부담되는 기업

장려금 지원

유연근무 활용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0만원 지원(1년)

※ 육아기는 40만원 지원 및
시차출퇴근에도 20만원 지원(1년)



잘 하는 기업은 **우수기업**으로 선정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해 드려요!

붙임 4

「유연근무 종합 컨설팅」 신청서

[제1호 서식] 유연근무 종합 컨설팅 신청서

「유연근무 종합 컨설팅」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1. 신청 구분

기업 구분	☐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 ☐ 중견기업		
결격사유 해당 여부	① 고용보험 미가입 또는 보험료 체납 여부	☐ 예	☐ 아니오
	② 최근 3년간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여부	☐ 예	☐ 아니오
	③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명단 공표 여부	☐ 예	☐ 아니오
	④ 2024년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 여부	☐ 예	☐ 아니오
	⑤ 대기업 여부	☐ 예	☐ 아니오
	⑥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여부	☐ 예	☐ 아니오
희망하는 컨설팅 분야 * ① 재택·원격, ② 시차 출퇴근, ③ 선택근무 중 반드시 2가지 이상 선택	☐ 재택·원격근무 ☐ 시차출퇴근 ☐ 선택근무제 ☐ 기타 유연근무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유연근무(재택·원격·시차선택)에 대한 컨설팅 희망 여부	☐ 희망함 ☐ 희망하지 않음		
*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남·녀 근로자 모두 포함)의 유연근무에 대한 컨설팅을 희망하는 경우 컨설팅 대상 사업장으로 우선 선정합니다.			
컨설팅 수행기관	☐ 한국능률협회컨설팅 ☐ 한국표준협회 ☐ 한국생산성본부 ☐ 시애틀컨설팅(주) ☐ 미지정		

2. 사업장 일반 현황

사업장명			대표자(성명)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고용보험관리번호		
업종		주요 생산품/서비스		

3. 사업장 상세 현황

총자산	’21년	원	매출액	’21년	원
	’22년	원		’22년	원
	’23년	원		’23년	원
근로자 현황 (고용형태)	정규직	명 (女 명)	근로자 현황 (직군)	사무직	명 (女 명)
	계약직	명 (女 명)		생산직	명 (女 명)
	계	명 (女 명)		계	명 (女 명)
노동조합	☐ 유 (조합원수 명) ☐ 무		상급단체 (중복체크 가능)	☐ 한국노총 ☐ 민주노총 ☐ 기타 ☐ 미가입	
노사협의회	☐ 유 ☐ 무				
담당자	성명		사무실		
	부서명		휴대전화		
	직책		이메일		
정부 주관 각종 우수·인증 현황	※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우수·인증 현황은 반드시 포함				

본 기업은 위와 같이 「유연근무 종합 컨설팅」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인)

고용노동부 장관 귀하

첨부	1. 컨설팅 수행계획서, 2. 노사대표 합의 확인서, 3. 사업자등록증, 4. 고용보험 완납증명원
서류	5. 중견기업 확인서(해당자에 한함), 6. 매출액 및 자산현황 증빙자료, 7. 정부 주관 우수·인증 증빙자료(해당자에 한함)

「유연근무 종합 컨설팅」 수행계획서

I. 사업장 개요

○

※ 기업 연혁, 주요사업, 생산품목 등 기업 소개내용을 1/2페이지 이내의 분량으로 기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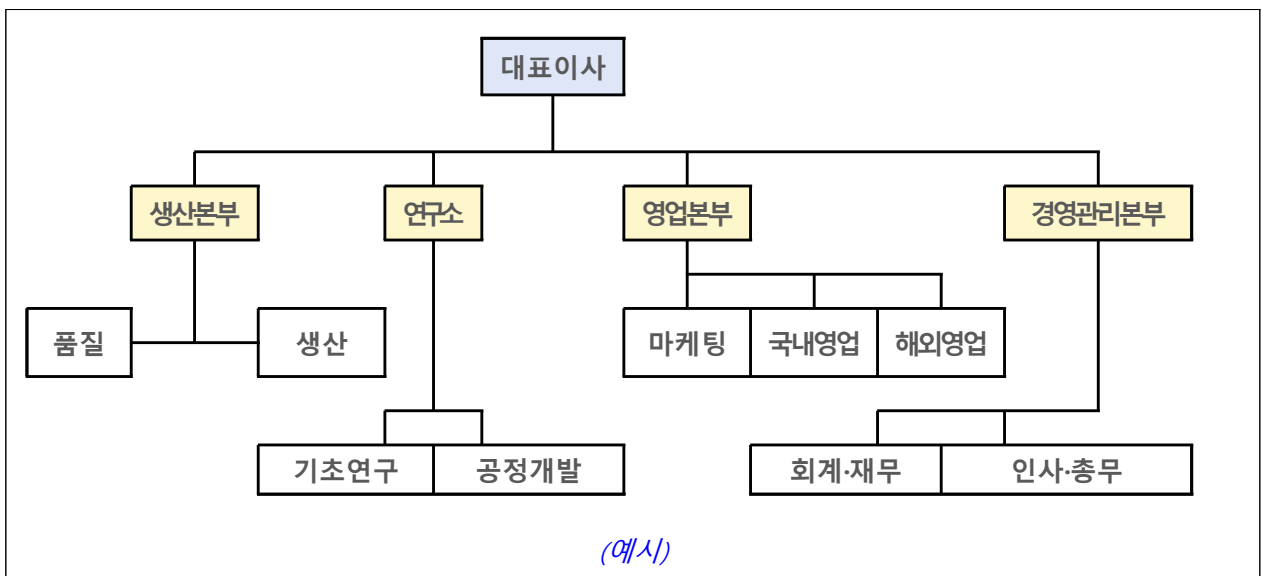
II. 컨설팅 추진 개요

1. 수행 계획

가. 컨설팅 운영 주체

컨설팅 관리책임자	소속	성명 (직위·직급)	전화번호
컨설팅 전담팀 구성	☐ 노측대표자 ☐ 사측대표자 ☐ 인사부서장 ☐ 임원 ☐ 임원 외 보직자 ☐ 일반근로자 ※ 참여가능자 모두 체크		
정보제공 범위	☐ 문헌자료 ☐ 전직원 설문조사 ☐ 경영진 인터뷰 ☐ 근로자 인터뷰 ☐ 노측대표자 인터뷰 ※ 협조 가능한 사항 모두 체크		

나. 조직 현황



다. 유연근무 도입 현황

활용 유형	재택, 원격, 시차출퇴근, 선택근무, 기타 유연근무		
제도 도입 근거	☐ 취업규칙 ☐ 단체협약 ☐ 근로계약 ☐ 미도입 ☐ 기타()		
활용 인원	() 명 ※신청일의 직전 월에 유연근무 실시 근로자수 기재		
직종별 활용현황	직종	유연근무일	활용인원
	연구개발직	주 2회(목, 금)	00명
	관리·사무직		
	영업·서비스직		
	생산·노무직		

* 유연근무 유형이 여러 개인 경우는 모두 작성하고 직종은 사업장의 실제 직종 내용에 따라 추가하여 작성 가능, 선택근무의 경우는 직무, 활용 인원만 작성

라. 유연근무 활용 계획

활용 계획 유형	재택, 원격, 시차출퇴근, 선택근무, 기타 유연근무		
활용 계획 인원	() 명 ※컨설팅 이후 유연근무 활용(예정) 근로자수 기재		
직종별 활용현황	직종	유연근무일	활용인원
	연구개발직	주 2회(목, 금)	00명
	관리·사무직		
	영업·서비스직		
	생산·노무직		

* 유연근무 활용 계획 유형이 여러 개인 경우는 모두 작성하고 직종은 사업장의 실제 직종 내용에 따라 추가하여 작성 가능, 선택근무의 경우는 직무, 활용 인원만 작성

마. 유연근무 인프라 현황

인프라 구축 현황	1	예시) 그룹웨어, ERP, 클라우드 서비스, VPN 등
	2	
	3	
	4	
	5	
인프라 개선 계획	☐ 인프라 신규 도입 예정 ☐ 기존 인프라 개선, 교체 ☐ 개선계획 없음	

바. 유연근무 관련 정부지원 제도 신청 계획

고용노동부	☐ 유연근무 장려금 지원 (유연근무 활용 근로자 1명당 1년간 최대 360만원 지원) ☐ 유연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 (유연근무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 비용 최대 2천만원 지원)
기타	☐ (소관부처명: , 사업명:)

2. 지원 필요성 및 지속 가능성

○

※ 컨설팅 신청 사유, 유연근무 도입 필요성, 현재 유연근무 유형별 도입 상황 또는 도입 계획, 컨설팅 수행에 대한 노사 의지, 컨설팅 이후 제도 확대 방향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노사대표 합의 확인서」	
○ 사업장명 : ○ 컨설팅명 : 2024년 유연근무 종합 컨설팅 ○ 기 간 : 컨설팅 지원 신청일(노사합의일)로부터 1년	
「유연근무 종합 컨설팅」의 참여와 관련하여 노사가 충분히 합의하여 <u>공동결정</u>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사업주 측	대표자 직 위 : 연락처 : 성 명 : (인)
근로자 측	대표자 직 위 : 연락처 : 성 명 : (인)
※ ‘노사대표합의 확인서’는 노사간 협력과 신뢰에 기반한 원활한 제도 개선을 위해 컨설팅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필수 구비서류임 ※ 사업주 측 대표자: 사업장 대표 (컨설팅 신청자 및 업무 담당자가 아닌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기재) ※ 근로자 측 대표자 -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위원장 -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고, 노사협의회만 있는 경우 근로자 측의 근로자 대표 -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도 없고, 노사협의회도 설치되지 않았지만, 근로자 과반수에 의해 선출된 자 - 근로자대표가 될 수 없는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하며,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 사업주나 사업경영 담당자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로, 권한과 책임의 유무는 부장 또는 과장이라는 형식적인 직명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직무 권한에 의하여 판단됨	